

# 장학위원회 규정

제 정	1995. 3.
제 정	2007. 9.
개 정	2013. 3.
개 정	2017. 3.
개 정	2018. 2.
개 정	2018. 7.
개 정	2022.11.
개 정	2024. 1.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장학규정 제2장에 의하여 본 대학 장학금 지급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구성)** ①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(개정2018.02.08.)(개정 2022.11.18.)(개정 2024.01.18.)

②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부총장, 학생복지처장, 총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교내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2018.07.02.)(개정 2022.11.18.)(개정 2024.01.18.)

**제3조 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.결정하여 지도한다.

1. 장학생의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
2. 장학생의 선발 및 추천에 관한 사항
3. 장학에 관한 세부지침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(개정2017.03.27)
4. 기타 장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

**제4조 (임무와 임기)** ①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하고 위원장이 위촉한 업무를 처리한다.

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(개정2022.11.18.)

**제5조 (회의)**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.

②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
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을 참석토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6조 (의결)**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/3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개정 2017.04.01.)

**제7조 (의결집행)** ①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.

②특별한 정책사항의 경우 교무위원회로 상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의 특례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의 특례)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1.18. 우송대학교 직제규정 개정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